

< 일 러 두 기 >

- 법령명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코드-기준 4.2.8 잎채
소의 1차 생산 및 가공 기준
- 제정일 : 2022년 08월 09일
- 최종개정일 : 2023년 07월 19일
- 출처 :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방문일 : 2026년
06월 23일)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

Standard 4.2.8 잎채소의 1차 생산 및 가공 기준

참고 1: 본 (법률)문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Cth)*)에 따른 기준이다.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 코드(*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는 이 기준에 의해 규정된다. 섹션 1.1.1-3 함께 참조.

참고 2: 본 기준은 호주에만 적용된다.

디비전 1 서두

4.2.8-1 명칭

본 기준의 명칭은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 코드 - 기준 4.2.7 - 잎채소의 1차 생산 및 가공 기준이다.

참고: 발효:

본 기준은 공보일자로부터 30개월 후의 일자에 발효되며 이 날짜는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법(1999년 (Cth)) 섹션 92에 따라 공보(Gazette)와 뉴질랜드 공보에 게재되고 발표되어 정식 발효일로 인정된다. 동 법 섹션 93도 함께 참조.

4.2.8-2 정의

본 기준에서:

잎채소란 잎을 생으로 섭취하는 잎이 많은 특성의 채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어린잎채소, 상추 및 잎허브를 포함하고 새싹채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재배지란 잎채소 재배에 사용되는 모든 장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개방형, 부분 밀폐형 또는 밀폐형 재배 구역을 포함한다.

수확이란 재배지에서 잎채소의 채취 및 폐기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채집, 절단, 현장 포장(소매 판매용 포장 포함) 및 재배지에서 공급망의 다음 단계까지의 운송을 포함한다.

시설 및 설비란 다음의 설비, 기반 시설, 체계 및 자동차를 의미한다:

(a) 1차 원에 생산업자 또는 1차 원에 가공업자에 의해 사용되며; 그리고

(b) 유태소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접촉이 있다.

1차 원예 생산업자란 유태소의 재배 및/또는 수확과 관련된 사업, 기업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1차 원예 가공업자란 수확된 유태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활동 중 하나 또는 이 상과 관련된 사업, 기업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 (a) 세척;
- (b) 손질;
- (c) 분류;
- (d) 소독;
- (e) 보관;
- (f) 수확한 유태소의 혼합
- (g) 포장; 그리고
- (h) 1차 가공 시설 간 운송.

관련 활동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 (a) 1차 원예 생산업자와 관련하여, 유태소의 재배 및/또는 수확; 그리고
- (b) 1차 원예 가공업자와 관련하여; 다음 활동 중 하나:
 - (i) 수확한 유태소의 세척;
 - (ii) 수확한 유태소의 손질;
 - (iii) 수확한 유태소의 분류;
 - (iv) 수확한 유태소의 소독;
 - (v) 수확한 유태소의 보관;
 - (vi) 수확된 유태소의 혼합
 - (vii) 수확한 유태소의 포장; 그리고
 - (viii) 수확한 유태소의 1차 가공 시설 간 운송.

참고 1: 본 챕터에서(기준 4.1.1 중 조항 1 참고)

일반 식품안전 관리 요건은 기준 4.1.1의 디비전 2의 요건을 의미한다.

투입물은 1차 생산 또는 가공 활동에서 또는 연관되어 사용된 모든 사료, 깔짚, 물(재이용수 포함), 화학물질 또는 기타 물질을 의미한다.

참고 2: 기준 4.1.1 중 조항 3은 식품이 본 기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 한다.

4.2.8-3 적용

- (1) 본 기준은 호주의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에게 적용된다.
- (2) 본 기준은 유태소의 소매업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 (3) 본 기준은 조리, 냉동, 건조, 보존, 혼합을 포함한 수확된 유태소의 제조 또

는 수확된 잎채소의 착즙 또는 수확된 잎채소에 다른 식품의 첨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2.8-4 일반 식품안전 관리 요건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일반 식품안전 관리 요건을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4.2.8-5 이력추적제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다음 사항을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 (a) 잎채소 공급업자; 그리고
- (b) 잎채소를 공급받은 자.

4.2.8-6 투입물 - 씨앗, 묘목, 토양, 비료 및 물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다음의 투입물이 잎채소를 부적합하게 만들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a) 씨앗;
- (b) 묘목;
- (c) 토양;
- (d) 토양개량제 (분뇨, 인체 바이오고형물, 퇴비 및 식물성 바이오폐기물 포함);
- (e) 비료; 그리고
- (f) 물.

4.2.8-7 재배지

1차 원예 생산업자는 잎채소가 부적합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재배지가 위치하고, 설계되고, 건설되고, 유지되며 운영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4.2.8-8 기상 현상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기상 현상에 부정적으로 영향받은 잎채소가 부적합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적합한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2.8-9 시설 및 설비

- (1)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설 및 설비가 설계되고, 건설되고, 유지되며 운영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a) 시설 및 설비를 효과적으로 청소 및 소독한다; 그리고
 - (b) 잎채소를 부적합하게 만들지 않는다.
- (2)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잎채소가 부적합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 및 설비를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며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4.2.8-10 수확된 채소의 온도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잎채소를 부적합한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온도에 수확된 잎채소를 의무적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4.2.8-11 수확된 채소의 세척 및 소독

1차 원예 가공업자는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수확된 잎채소에 보이는 이물질이 제거된 상태; 그리고
- (b) 수확된 잎채소의 세척 또는 소독이 잎채소를 부적합한 상태로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8-12 동물 및 해충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재배지와 시설 및 설비에서 동물, 유해동물 및 해충의 존재를 최소화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잎채소가 부적합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8-13 기술 및 지식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관련 활동의 관계자 또는 관련 활동 관계자의 감독관은:

- (a)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 (b)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기술을 업무 수행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2.8-14 직원과 방문자의 보건 및 위생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잎채소가 부적합한 상태로 되지 않도록 직원 및 방문자가 개인 위생 및 보건 관행을 수행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2.15-15 부적합한 잎채소의 판매 또는 공급

1차 원예 생산업자 및 1차 원예 가공업자는 잎채소가 부적합한 상태임을 합리적으로 인지하였거나 의심하였어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인체 섭취용으로 판매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이력

개정 이력은 기준의 각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정보에는 관련 개정사항에 대한 시행 또는 중단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개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법 1991(*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Act 1991*) 섹션 92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사항에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효력 중단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편집본 정보

본 편집본은 2023년 7월 19일(개정번호 220호까지)자로 시행된 기준 4.2.8의 편집본 제 1호이다. 편집본에는 해당 일자까지 편집본에 영향을 미친 시행 중인 개정사항이 모두 수록된다.

본 편집본은 2023년 7월 19일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작성했다.

미시행 개정사항이나 효력이 중단되는 조항

미시행 개정사항의 효력이나 조항의 효력 중단에 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를 돕기 위해 관련 시행일자나 중단일자와 함께 음영 처리된란에 넣어 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호주 연방법령등록부에 등록되는 편집본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거나 생략한 채로 반영되며, 해당 날짜가 지나면 개정 이력에 등재된다.

아래 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ad = 추가 또는 삽입 am = 개정

exp = 만료 또는 시행 중단 rep = 폐지

rs = 폐지 후 대체

기준 4.2.8은 개정안 제210호(F2022L01062 - 2022년 8월 12일)의 일부로 2022년 8월 12일 호주연방관보 제FSC150호에 게재되었으며 개정이력은 다음과 같다.

변경된 섹션	개정 번호	FRL 등록 관 보	발효일자 (중단일자)	개정 결과	개정 내용
4.2.9-8	220	F2023L0100 2023년 7월 11일 FSC160 2023년 7월 19일	2023년 7월 19일	rs	섹션 제목 삭제 후 대체